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계약원가심사분야 특정감사 —

2023. 11.



1. 일람표

(단위: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1건	1	0	1	19,582	0	0	0	0
1	◆◆◆◆과	○○문화원 건립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1	0	1	19,582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문화원 건립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 ◆◆◆◆과에서는 “○○문화원 건립 건축공사”을 아래 [표 1]과 같이 2021. 6. 22. (주)□□ ○○○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문화원 건립 건축공사 현황

(단위: 백만 원)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문화원 건립 건축공사	○○문화원 (A=2,512㎡)	5,283	3,891	1,392	2021. 6. 16.	2021. 6. 22. ~ 2022. 12. 24.	주□□ ○○○	

1. 설계변경 원가심사 미이행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설공사는 건설 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하면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고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거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2회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이 증가하여 설계변경에 대한 원가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2] 설계변경 내역

(단위: 천 원)

공 사 명	사업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증감액 (최초계약대비)	증감률 (최초계약대비)	비고
●●문화원 건립 건축공사	2021. 6. 22~ 2022. 12. 24.	2021. 6. 16.	3,415,197			최초계약
		2021. 12. 2.	3,686,616	증271,419	증7.95%	1회변경
		2022. 3. 22.	3,804,290	증389,093	증10.55%	2회변경
		2022. 4. 19.	3,722,158	증306,961	증8.07%	3회변경
		2022. 11. 14.	3,935,396	증520,199	증13.98%	4회변경
		2022. 12. 24.	3,890,747	증475,550	증12.08%	5회변경

그 결과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현장 내에서 처리했음에도 토사운반 및 상차비 1,719천 원, 기초말뚝과 관련해서 실항타 수량만큼 미정산된 사업비 2,892천 원, 단열뿔철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6,027천 원, 무근콘크리트깨기의 경우 작업능력 적용 시 최대값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값을 적용하여 187천 원, L형 옹벽을 설치하면서 철근가공 및 조립의 경우 기존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신규 비목으로 적용하여 2,297천 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총 19,582천 원(세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옥상 난간 미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주위에는 높이가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당초 설계에는 옥상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고 옥상 난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회 설계변경 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간을 제외한 후 준공처리 하였다.

3. 우수유출 저감대책 미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시설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포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문화원 건립 건축공사”의 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지면적이 2,000㎡를 초과한 4,612㎡이어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과 대책 수립을 누락한 설계서를 시정 및 보완요구 없이 2021. 3. 12.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 사실이 있다.

1)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

또한 4회 설계변경 시 우수유출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없이 입도가 불규칙한 토사 및 사석으로 되메우기를 한 후 성토지반에 대한 지내력시험을 하지 않고 바닥 처짐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주차장 부분에 당초 설계되어있는 아스콘 기층 대신 레미콘으로 타설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옥상난간은 「건축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사업비 19,582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